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한국산업규격(KS)는 유효기간이 몇년으로 되어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서에는 최초인증일 또는 최종변경일은 명시하나, 별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규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타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 그 계속성 여부를 심사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해 주고 있으므로, KS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와 내용상으로 동일합니다.
 - 정기심사를 받지 않거나 정기심사 결과 KS인증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KS인증의 유효기간은 차기 정기심사일까지입니다.
- KS인증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근거 및 종류
 - 근거
 -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 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3조
 - 정기심사의 종류
 - 1) 일반관리 품목의 최초 정기심사는 인증후 5년이 도래되는 해
 - 2) 최초 정기심사 후 차기 정기심사는 그 결과에 따라 3~4년 마다
 - 3) 특별관리 품목은 매년마다 정기심사(제품심사) 실시

Q 안전인증 취득 제품인 전자식안정기 부품변경시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자식안정기의 입력 wire을 타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변경하고자하는 부품이 동일 규격에 KS인증,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입니다.

안전인증 시험 기관에 부품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되는 부품이 안전인증 또는 ks 제품이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부품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시험을 하며, 일정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자식안정기 부품(입력전선) 변경”은, “안전인증 취득제품 인증서에 명시된 부품(동등 사양의 안전인증 또는 KS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청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